C - 114 - 2020

- (다) 화물은 해당 차량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의 허용 적재하중을 준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.
- (4) 차량계 운반기계 등의 이송작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거나 성토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
- (나) 발판은 충분한 길이·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 유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
- (다)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과 강도 및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
- (라) 지정운전자의 성명·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
- (5)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은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6) 신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
 - (나)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
 - (다)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
 - (라) 로프 풀기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할 것
 - (마) 로프의 체결과 풀기 및 덮개 작업은(씌우기·벗기기) 추락방지 대책 및 로프의 훼손 손상상태를 점검·확인할 것
 - (7)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,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 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8)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